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최고 권력자는 또 누구이고. 혹자는 국민이라 하고 또 다른 혹자는 대통령이라 한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꾀발을 부릴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2~3년이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하느라 바쁘고 임기 마지막 해는 대선이 있기에 식물인간이나 마잔가지이지 않은가. 그 전 1년부터는 권력 누수가 심해질 것이고. 때문에 임기 중 2~3년에 하고자 하는 정책 등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마저도 휘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간신들이 눈을 가리면 사실 임기 5년 동안 얼굴마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대통령 자리는 막강하다. 강단진 생각으로 정의적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을 펼쳐간다면 멋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5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마다 수많은 오욕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았잖은가. 물론 질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사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헌법에는 주권재민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의 노예들에게, 정확히 말해서 이 나라의 1%에게 등 받쳐주는 집권일 수도 있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그래도 한 가지 위로성 안주는 있다

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재벌 등 상위 1%라 한다. 좀 더 범위를 넓혀주면 상위 10%라고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이자소득의 45%를 가져간다고 한다. 이 같은 쏠림현상은 금융자산 보유가 소수 부유층에게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이다.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전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한다. 그 파급력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손끝 까딱 않고도 시간만 흐르면 불어나는 돈벼락에 일부 특수계층은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질 정도라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돈과 행복이 비례한다는 것 말이다. 소유하고 싶은 차 모두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집 모두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모두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돈에 구애됨 없이 갈 수 있는 것 등 말이다. 이 정도의 돈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돈에 있어서 상위 1%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것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국가도 어찌지 못하는 것 같다.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미국 등 외국 국적 등으로 환

동하는 자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병역 의무를 필하지 않는 자들 또한 상당수라 한다.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납마다 나오는 불로소득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징집이 해제될 때가 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합법을 가장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고. 그 많은 불로소득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부적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을까. 모를 일이다. 그들만의 세션 안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혹시 소문대로 이 나라는 10%, 더 적게는 1% 내지 0.01%가 손아귀에 쥐고 있기 때문일까.

권력은 짧고, 국가공권력은 그에 예측되고, 경제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능할까.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국을 드나들며 맘껏 살고 있는 것일까. 대다수 국민들의 피를 빨아가면서. 그래도 한 가지 위로성 안주는 있다. 수명만큼은 공평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꾀발 부려도 그들 수명 역시 8~9십 년 넘기지 못하기에. 더 빨리 사망할 수도 있고.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를

지난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군의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역대급이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산불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먼저 산불 발견 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예방이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개개인이 산불 예방에 힘쓰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중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1부700원			

기자수첩



김준형 기동취재본부장

동곡 농협의 현실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사업계획서’도 없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매입 승인 및 실행함으로써 ‘의혹 투성’”이라는 본지의 단독 취재 및 보도로 인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를 목적으로 복룡동 123-1번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사전계약(20.01.06)을 한 후 사후 이사회 승인(20.01.22)을 받았지만, 이 토지의 매입은 총 사업비 50억에서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 승인, 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무시하였고, 매입 당시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광산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기간 중이었다. 해당 토지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성 오니는 폐수처리오니·정수처리오니·하수처리오니·하수준설도·건설

오니·석골재 폐수처리오니·그 밖의 공정 오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순물이 침전되면서 형성되는 급속, 모래, 점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오니는 유기물 함량이 적고, 산업 공정에서 생성되는 고형물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각의 적절한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산업폐기물 중 **오니(sludge)**의 매립 관련 민원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보다 철저히도 정밀하게 처리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표준적인 행정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민원 접수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시료 채취 지점 마킹, 지하 0.5m, 1.0m, 1.5m 등 다양한 깊이에서 시료 채취 (현장 여건에 따라 다름)
- 2) 시료 보관 및 이송·시료를 오염되지 않게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운반
- 3) 토양 시료 분석 (공인 환경 측정기

관에서 실시)

- 분석 항목 : 중금속류(납, 카드뮴, 아연, 구리 등), TPH(총 석유계 탄화수소), 벤젠류, 페놀류, 유기 염소계 등
- 분석 기준 : 토양오염 우려 기준.(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상 01)
- 4)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분석 결과가 기준 초과 시-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가능
- 결과는 의뢰인 및 행정기관(지자체, 환경청 등)에 제출, 공무원의 권한 행사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이 모든 행위에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농협 로컬푸드 사업에서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투자가 예상되고, 이 중 부지 매입에 2.7억 원이 소요되는 경우,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는

- 1) 사업 계획 수립(실무 단계)은 조합 내부(기획, 경제사업 팀 등)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산안(총사업비 50억 내외), 재원 조달 계획(자체 자금, 보조금, 융자 등), 필요 부지 확보 계획, 건축계획, 인력 조달 계획, 매출 계획 및 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2) 이사회 보고 및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계획을 심의, 특히, 부지 매입(2.7억) 및 건축 등 자산 취득이 포함되므로 자산관리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 3) 대의원회(또는 총회) 승인은 총사업비가 조합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예: 수십억 단위) 그리고, 부지 매입, 건축, 대규모 자금 집행이 수반되면 반드시 대의원회(또는 총회) 승인을 받아, 승인 후에 구체적인 부지 매입, 설계, 건축 계약, 로컬푸드 운영계획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를 진행하기 위한 토지 구입 과정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 이를 거론한 적이 없다.

그 당시 동곡 농협의 조합원들은 농협 이사회가 조합장의 거주지의 역할만 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농협의 양극창고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도 로컬푸드 토지 구입 과정처럼 급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로컬푸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은 현 조합장과 당시 이사들, 그리고 토지 매각과 매입에 관련한 사람들이 최소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한 장 없이 농협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한 과정은 극히 비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조합장의 안일함, 이사 및 감사의 업무태만, 조합원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동곡 농협 이동운 조합장은 올해 초 조합원들이 참여한 보답대회와 이사회, 그리고 전현직 임원 비상 모임을 통해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다른 사진 기사를 가져와 짜깁기했다며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와 망언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 직원들까지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행법 제307조 2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법 위반 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례(대법원 2013도 13153 등)

에서 보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언론 보도를 ‘허위 기사’라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면서 당사자를 비방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운 조합장은 그동안 본지의 취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허위사실만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다.

그동안 동곡 농협과 이동운 조합장은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사업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원들을 향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협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 지역 여론을 갈라치기 해 왔다.

절차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전직 감사를 포함하여 투명한 경영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을 고립시켰지만, 이번,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백히 밝혀서 잘못된 관행과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 앞으로 동곡 농협이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협으로 성장하길 빌어 본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